



삼일회계법인

Industry Issue & Tax 01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떠오르는 세무 쟁점들

September 2025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할 이른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지난 몇 년간 침체기에 있던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 여기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세계 환경과 향후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상자산 거래, 과세관청의 레이더에 포착될까?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있으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과 상속 또는 증여하는 가상자산은 각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가상자산은 암호화된 방식으로 블록체인기술과 같은 분산된 네트워크에 생성, 저장되는 탈중앙화된 구조로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 특히 개인의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및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우선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인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의 특성상 과세관청이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예: 부모가 해외에 있는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자녀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마련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¹ 거래내역 제출 규정에 기초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 받을 수 있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교환, 이전 포함)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시행(2026년 거래 정보를 2027년부터 각 국가 간에 교환) 예정인 국가간 암호화자산² 정보 교환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 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의 정의가 규정되었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으로 정의 규정이 이관되었음.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음.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2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적으로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 (OECD CARF 주석서 섹션 IV (A)). 특이한 점은 기존 세법에서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던 것과 달리 아래에서 설명하는 CARF 이행을 위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에서는 암호화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임. 가상자산 정의가 CARF의 암호화 자산 정의와 다르고 좀 더 포괄적이지만, 국조법에서는 정보교환 참여국들 모두의 공통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CARF 규정처럼 암호화 자산으로 정의한 것으로 이해됨

1.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정보 추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부터(개인 거래는 2027년부터)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각 분기 및 연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출³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미 보유했거나 또는 향후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표 1]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보고 대상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기타 취득 거래
보고 대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거래자의 인적정보, 가상자산 종류, 거래일자, 거래유형 및 유형별 거래가액 등거래상대방의 인적정보 및 가상자산 주소 등

2.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과세관청은 접근 가능할까?

OECD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글로벌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CARF의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 성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가 제시한 2027년 CARF 이행 일정에 맞춰 2024년 12월 및 2025년 2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⁴을 각각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도 곧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2027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CARF 참여국가의 암호화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거래한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CARF 참여국에 소재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 및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당초 2022.1.1.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나 계속 유예되어 2027.1.1.거래분부터 적용됨

4 국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표 2] CARF 규정상 교환되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보고대상 암호화 자산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 암호화자산의 이전 미화 50,000달러 초과하는 가치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가로 관련 암호화 자산을 이전하는 것("소매 결재 거래")
암호화자산 정보 제공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 이름, 주소, 거주지 관할, 납세자 번호, 출생일, 출생지 등 단체: 명칭, 주소, 거주지 관할, 식별번호 암호화자산 사업자: 명칭, 주소, 식별번호 거래정보: 유형별 (법정통화 교환거래,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 이전거래, 소매 결재 거래) 취득/처분 시 취득 총액, 거래 총 단위, 관련 거래 수 등

3. 해외 금융정보 보고 의무, 가상자산 거래에도 적용될까?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에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⁵. 이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는 해외금융회사에 해당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 또한 해외금융계좌에 해당되므로, 해외에서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국조법 제53조

2.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세무 이슈도 함께 커진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래의 금융방식이라 불리는 탈중앙화된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과 DeFi 프로토콜이 운용되는 형태인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공약이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업권법을 발의⁶하고 있어 ICO (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들 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세무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DeFi 와 DAO, 금융의 미래가 던지는 세무 과제

기존 금융시스템에서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DeFi는 중앙화된 기존 금융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활용하여 이러한 중개기관 없이도 대출, 예금, 자산운용 등 거래를 운영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⁷를 의미한다.

DeFi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DAO 형태로 운영⁸되고 있다. DAO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 전통적인 기업과 달리 중앙 관리자 없이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사전에 협의된 운영 규칙 등을 자동화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투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따르는 수평적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DAO는 자체적인 토큰을 발행 (이른바, Governance Token)하여 토큰을 소유한 구성원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그 구성원에게 수익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통적인 이사회 등 중앙 집권적인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와 가상자산 성장을 계기로 DAO를 통해 운영되는 DeFi 프로토콜(대출, 자산운용, 탈중앙화 등)의 발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의 금융기관과 다른 DAO의 세법상 지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고, DAO 및 그 구성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것인가?

6 삼일PwC경영연구원, 디지털자산 패권 전쟁-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Issue Brief (July 2025), 2025, 34쪽 및 35쪽

7 즉,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직접 거래를 검증하며, 특정조건이 충족되면 스마트 계약이 즉시 실행되는 방식임. 해외에서는 이미 탈 중앙화된 환경에서 자산간 교환(예: Uniswap), 대출거래 서비스 제공(예: Aave), 자산운용서비스 (예: Spark protocol) 등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등들이 있음 (이선영. 최윤영, 다시 쓰는 디파이 지도, Korbit Research, 2025. 4쪽)

8 최초의 DAO는 2016년 출범한 "The DAO"라고 하고, Protocol DAO(Defi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조직), Investment DAO, Collection DAO 등으로 구분된다고 함. 하온누리,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의 현황과 이슈. 자본시장 포커스 2022-07호, 자본시장연구원, 2022. 3쪽

① DAO의 세법상 지위 또는 성격

DAO의 특성과 현행 세법 규정

DeFi 프로토콜이 대부분 DAO를 통해 운영될 뿐, DAO는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조직체를 표방하는 경우도 있어 DAO가 그 자체로 과세대상 조직인지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 다만, 조세 중립성과 경제적 급부능력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이다.

DAO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며, 기존 조직처럼 이사회나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DAO가 발행한 토큰을 소유한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에서 제안과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DAO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미국의 와이오밍주 및 몇몇 주의 입법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와이오밍주는 DAO를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현재 DAO에 대한 입법례가 없으며, 현행법상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민법상 단체, 협동조합 등 어떤 성격의 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⁹이 있다.

DAO의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세법상 DAO 지위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준다. 즉, 상법상 법인¹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고, 이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할지 아니면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지, 또는 구성원 개인들이 각자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할지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서 판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법인이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몇 가지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무관청 등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공익 목적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대표자 등을 선임하고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단체 등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구성원간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들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9 김주호/정병호,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과 기업연구 제14권 1호, 2024, 11쪽 및 28쪽

10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법인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 규정상 DAO의 세법상 지위 또는 성격

현행 법령상 DAO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회사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DAO는 현재 주무관청 등에 허가, 인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수평조직의 특성상 이사회 또는 단체 대표자 등이 없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DAO는 구성원인 참여자에게 수익배분을 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으로 하나의 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고,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여 공동사업 특례조항의 적용 가능성 또한 모호하다.

그렇다면 구성원인 참여자 각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는데, 참여자의 익명성, 중앙화 된 조직이 없는 DAO의 특수성 때문에, 개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더라도 현실적으로 성실납세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손쉽게 DAO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거나, 공동사업으로 의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기존의 기본적인 세법 체계와는 달라지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현행 규정으로는 DAO를 어떻게 과세해야 할지 모호하여 향후 DAO가 활성화되는 경우 과세문제를 두고 많은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DAO는 그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향후 어떻게 성장하고 확대되어 나갈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우나, 최소한 DAO의 기본 속성을 파악하여 세법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세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DAO의 성격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볼 경우, 공동사업, 집합투자기구나 조각투자상품 등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같은 DAO에 맞는 과세표준 산출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통해 사전에 운영규칙 등을 자동화해 둘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과 과세관청 납부 방식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이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DAO의 세법적 지위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과세 관할권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② DAO의 과세 관할권 문제

DAO는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중앙 집권화 된 관리체계 또는 조직도 없고 투자 등에 있어서도 국경 자체를 넘나들며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지역이나 물리적 기반을 기준으로 삼는 과세 관할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우선 법인세 측면에서 이러한 과세 관할권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구분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면 그 국내사업장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DAO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DAO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라는 개념이 없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제안되고, 블록체인 기술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구성원의 투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내의 DeFi 프로토콜 운영을 목적으로 DAO를 만들어 미국 와이오밍주에 등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따라 DAO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또는 이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내 원천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가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오밍주에서는 DAO를 유한책임회사로 보기에 법인격이 부여된다고 보면, 일단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DAO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전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AO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의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인세법의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에서 고정사업장이란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이어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물리적 공간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에서 업무가 수행되는 DAO가 우리나라에 고정된 장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앞선 와이오밍 주의 예시와 달리 등록되지 않는 또는 등록이 불필요한 DAO라면 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탈중앙화 되고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상 어느 나라에서 과세되어야 하는지가 더욱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DAO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라 1 디지털 과세처럼 전통적인 지역 또는 장소 개념에서 벗어나 과세 관할권과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해 보인다.

③ DAO 참여자의 보상 과세, 기타 원천징수 등 이행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DAO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 또는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DAO가 발행한 Governance Token을 소유하게 되며, 그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보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소득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Governance Token의 증권 해당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토큰을 주식과 같은 성격의 “이익을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아 토큰에 대한 보상을 배당이나 분배금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Governance Token은 단순히 DAO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토큰에 대한 보상은 그 참여에 대한 지불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만약 DAO의 세법상 지위를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하도록 한다면 현행 소득세법이 기존 배당소득과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배당소득으로 규정¹¹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이 받는 보상 또한 배당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 DAO를 법인 등으로 볼 수 없어 구성원이 받는 보상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어떤 소득으로 봐야 할지 더욱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일 토큰을 보유한 참여자들의 커뮤니티 참석과 의사결정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보게 된다면, 일종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한편, DAO를 단순히 실체가 없는 하나의 가상의 존재로 보고 개별 참여자들이 각자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DAO의 소득 자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개별 구성원들이 각자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익명성이 담보된 참여자들의 납세의무 이행 담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소결

결국, DAO의 성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세법상의 지위 부여와 납세의무 (법인 또는 1거주자나 공동사업처럼 간주, 각각의 참여자 개인 과세 등)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에 따른 소득 구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AO는 중앙화 된 조직이 없는 수평적인 자율 조직이므로, 전통적인 조직처럼 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할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AO는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므로, 정확한 과세기준을 관련 법과 세법에 마련해 둘 수 있다면, 세법상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원천징수 이행 등의 내용을 사전에 내재화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과세관청으로 납부까지 이행되도록 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표 3] DAO 예상 세무상 주요 쟁점 정리

항목	예상 쟁점
DAO의 법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O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없음 • 현행 법령으로는 DAO의 법적 성격 판단 어려움. 관련기준을 제시하는 법령 마련 필요
DAO의 세법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회사로 보기 어려워 법인 간주 곤란.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 볼 수 있을지도 불명확 • 소득세법상으로도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지 불명확 (1거주자 또는 공동 사업자, 개별 참여자 개인) •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성실 납세 담보가 현실적 어려움 (납세의무자가 개별 개인인 경우) • 세법상 DAO 취급 기준 마련 필요
DAO의 과세 관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수평 조직 특성상 본점, 실질적 관리장소 등 판별 어려움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도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으로는 판단 곤란 가능성 존재 • 이중과세 방지 위해 국제적인 공조와 DAO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념체계 도입 필요
DAO 참여자 보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큰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DAO 성격에 따라 참여자 보상 성격 달라질 수 있음. (배당소득 가능성 존재) • 참여자 개인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보상의 소득구분은 의미가 없지만 성실납세 담보 어려울 것임 • 그 이외 경우라도 기타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제공), 증여 등 보상 성격 규정 모호함 • DAO 특성을 반영한 소득 성격 규정 필요

2. 가상자산 ICO, 세무상 주요 Issues

2010년 후반 ICO 열풍이 불 때 우리나라는 사실상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 프로젝트들은 해외법인을 통해 ICO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가상자산 및 생태계 개발, 운영 등은 내국법인이 수행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ICO는 별도의 해외법인을 통해 진행한 후 내국법인이 기술용역 지원 대가로 코인 등을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해외 ICO 법인의 사실상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내국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코인 판매 행위를 매출거래 또는 부채, 자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내국법인이 받은 기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등 제반 문제가 대두되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ICO가 허용될 경우, 상기처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할지, 아니면 개발법인이 직접 코인 발행 및 판매를 가능하게 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굳이 전자로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ICO의 경우에 발행되는 토큰의 증권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 먼저 ICO의 경우 수익인식과 관련된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토큰 발행 및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

K-IFRS를 적용하는 발행법인이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발행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¹²하도록 하고 있다. 즉 판매시점에는 선수수익처럼 부채로 인식한 후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행법인이 이행해야 할 플랫폼 구축, 생태계 활성화 등 수행의무를 백서나 약정서 등에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수행의무를 완료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회계상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면 된다.

한편, 이행해야 할 수행의무의 성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수행의무가 단기간에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토큰판매시점과 수익인식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 세법에서는 ICO에 대한 명확한 수익인식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는 해외법인을 통한 ICO의 경우, 유ти리티 토큰(즉,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¹³하도록 회신하고 있을 뿐이다. 해당 유권해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같은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의 해석이기도 하고, 해당 유권해석에서의 법인이 이행해야 할 수행의무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같은 점들이 그 해석 당시 고려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유권해석에 따르면, 발행법인이 ICO를 통해 가상자산인 토큰을 투자자에게 분배할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분배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면 수익을 인식할 정도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세법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택하면서도 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 기준을 고려하여 많은 부분 수익인식시기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12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 토큰발행기업의 회계처리'의 나. 판매계약 관련 회계처리

1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543, 2023.03.06., 기준-2022-법무법인-0118, 2023.03.09.

그리고, 유권해석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해석에 불과하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수익인식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상의 처리를 고려하여 법인세법에 수익인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개발자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무상 가상자산(토큰) 지급

ICO를 하는 경우에 ICO 전·후에 플랫폼 또는 토큰 개발, ICO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이나 개발자에게 가상자산인 토큰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계약에 따라 개발자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급여 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 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현금이 아닌 토큰의 무상배부형식을 취하다 보니 과세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라면 어느 시점인가? 토큰 배분시점인가 아니면 토큰을 개인이 매각한 시점인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의 성격을 가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의¹⁴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에 배분되는 토큰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토큰 배분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토큰을 보유한 개인은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추후 양도하는 시점에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는 개인의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가 유예되고 있다.

참고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벤처기업 등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비과세·분할납부·양도소득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¹⁵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ICO와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ICO에서 임직원 등에게 배부되는 토큰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제3자에 대한 마케팅 목적의 무상 가상자산(토큰) 지급

ICO과정에서 마케팅 목적 등으로 임직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 또는 다른 토큰을 보유한 개인들에게 에어드랍 (Airdrop) 방식 등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토큰을 배포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무상으로 토큰을 받은 개인들은 과세가 되는 것이 타당할까?

현재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전 받은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대가성 여부 또는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을 고려해서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¹⁶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ICO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4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15 조특법 제16조의2 부터 제16조의 4

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표 4] ICO 예상 세무상 주요 쟁점 정리

항목	예상 쟁점
가상자산(토큰) 판매 수익인식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수행의무 이행 시점 수익 인식 법인세법: 명확한 규정 없으나 유권해석상 판매시점 수익인식 수행의무 성격 다양성 및 회계처리 감독 지침 등 마련 고려, 세법에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필요
개발자 포함 임직원에 대한 무상 가상자산(토큰) 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일반적으로 급여로 보는 것을 권장 세법: 근로 제공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 ICO 활성화를 위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와 유사한 세제 혜택 도입 검토도 고민 필요
제3자에 대한 무상 가상자산(토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 목적 무상 지급 토큰의 증여세 대상 가능성 고려 필요

지금까지 조세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OECD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 파악을 위한 CARF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로 거주자나 내국법인 등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 산업 성장의 한 축이 될 DeFi/DAO와 ICO의 예상 세무상 쟁점들도 소개하였다.

이처럼 가상자산 산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현재의 세법 체계하에서는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력이 큰 미래의 가상자산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세법에 정확한 과세기준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ontact Us

가상자산 산업 세무 전문

오남교 Partner

nam-gyo.oh@pwc.com

02-709-4754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9T-RP-098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